
2021년 중구 「적극행정」 실행 계획



감사담당관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방향	1
1. 추진근거 및 배경	1
2. 적극행정 개념	2
3.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3
II. 그 간의 추진 실적	3
1. 2020년 주요성과	3
2. 2021년 보완사항	4
III. 적극행정 추진체계	5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5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5
3. 적극행정 교육 확대 실시	6
4. 적극행정 홍보	6
5. 적극행정 자치법규 정비	6
6. 적극행정 규제개혁 추진	7
7.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7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7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7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8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8
1.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8
2.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8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0
VI. 소극행정 혁파	11
1.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12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13
VII. 행정사항 등	14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적극행정 실천과 소극행정 근절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편의 증진을 통한 국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I 적극행정 추진방향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2021.1.5. 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021.3.)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020.7.20. 제정)

□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역할이 중요한 상황
- 특히, '20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추진뿐만 아니라 계류 중인 국정전략사업 등 **주요정책을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여 국민체감 성과달성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

< 대통령 말씀 >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알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 바람('19.2.12.)
-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함.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20.3.17.)

2. 적극행정의 개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의미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 판단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3.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주민편익 증진

분야	적극행정 추진체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자치법규 정비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분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II 그 간의 추진 실적

1. 2020년 주요성과

□ 적극행정 운영체계 정비 및 활성화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 2020. 3월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2020. 7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지속 관리
 - 공보육 실현을 위한 어린이집 직영체계 구축 (여성보육과)
 - 다산동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주차관리과)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 적극행정 교육영상 제작·촬영 → 유튜브 채널 활용 교육
-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홍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정

- '20년 상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장려상 수상
 - 우수사례명 : 지자체와 학교가 손을 잡고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을 시작하다! (교육아동청소년과)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 2명 (구청장 표창)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공무원 호봉산정 오류에 따른 임금 환수 관련 (가로환경과)
 - 주차창법을 위반하여 무단철거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 (주차관리과)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 2020. 11월

소극행정 점검 및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분기별 민원처리실태 점검 시 민원자연처리 및 소극적 민원처리 내역 점검
- 소극행정 신고센터 이관 민원 처리 93건 (소극행정 기준 충족 0건)

2. 2021년 보완사항

적극행정 주민 참여 방식 확대

- 주민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민원, 갈등 사안등과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서 주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적극행정을 통한 정책 지원체계 필요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으로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체계 마련하여 주민체감 성과 창출

III

적극행정 추진체계

1.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전담부서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책임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
▷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 적극행정 자치법규 정비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2020.1.)」에 따라 공단은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구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자체 실행계획 수립

* 향후 구-공단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 관련 시책 및 우수사례 등 공유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중구 인사위원회 대행)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배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징계 등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함
-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사전컨설팅과 관련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제공

3. 적극행정 교육 확대 실시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8조)
-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이수 : 2021년 연중

적극행정 신규자 교육 : 2021년 상반기

- 적극행정 제도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등

적극행정 심화 교육 : 2021년 하반기

-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등

4.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주민추천제 운영

- 주민추천창구를 통해 우수공무원 및 우수정책 추천 접수
-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발 시 가점 부여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 적극행정 제도 안내, 우수사례 등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 카드뉴스, 리플렛, 영상 등을 SNS,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홍보

5. 적극행정 자치법규 정비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 등 반영

6. 적극행정 규제개혁 추진

-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적극적 발굴 및 건의
- 직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 운영 등

7. 적극행정 증점과제 발굴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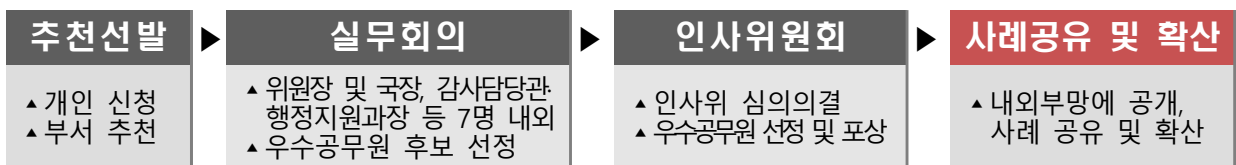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선발시기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선발절차

-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등 공정·투명한 절차 마련



선발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 향상등에 기여한 정도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원칙

○ 성과와 개인희망을 고려

-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희망을 고려

○ 성과와 보상의 시차 단축

-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빨리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

인센티브 종류 및 대상은 별도기준 마련

-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단축, 표창 및 포상, 포상휴가,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 (영 17조)

-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절차 및 범위 :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4조
-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

2.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의견 등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행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사전컨설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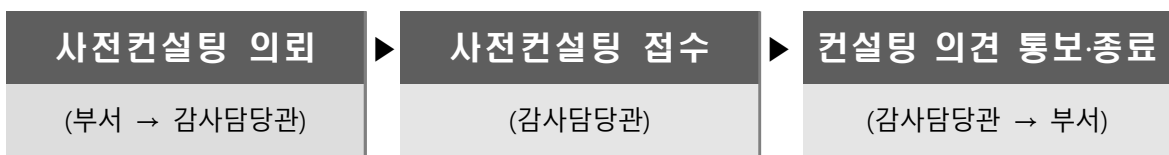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사전컨설팅 제외

- ①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사전컨설팅 처리 절차

○ 자체처리 가능한 경우



○ 자체처리·판단이 어려운 경우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 추진배경

- 징계 요구 등 면책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징계 등 면제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면책제도 운영현황

- 징계 요구 등 면책
 -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신청 :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가 종료된 후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감사담당관에 제출
- 징계 등 면제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음

소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기준

소극행정의 정의

-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p>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태만	<p>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능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p>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p>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1. 소극행정 점검 및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점검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 점검
 - 민원처리실태 감사 시(반기별) 민원사항에 대한 긍정적·적극적 해결 노력 여부 점검
 - 점검결과 수범사항 등은 전파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신분상 조치

□ 소극행정 엄정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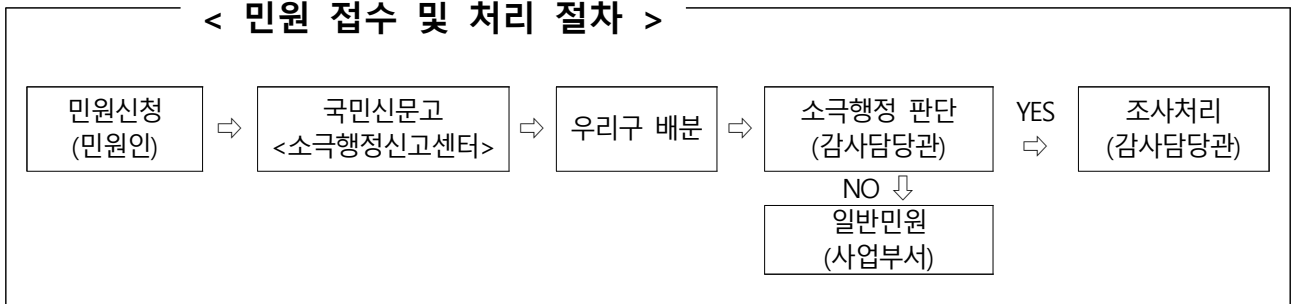
- 소극행정 적발 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 '훈계' 조치

【징계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민원신청 : 온라인(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및 서면 등
- 소극행정 여부 판단 및 조사

【접수된 민원이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감사담당관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접수된 민원이 일반민원의 경우】

- 소관부서에서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처리기간 : 일반적인 사항은 7일,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VII

행정사항 등

□ 주요추진 일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추진체계			
▲ 적극행정 점담부서 지정·운영	감사담당관	연중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행정지원과	연중	
▲ 적극행정 자치법규 정비	감사담당관	1~3월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감사담당관	4월, 9월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추진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과	상시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반기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행정지원과	12월	
3.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기획조정과	필요 시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기획조정과	필요 시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감사담당관	연중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감사담당관	연중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업정 조치	감사담당관	연중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감사담당관	연중	

□ 행정사항

○ 전 부서(동)

- 부서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 자체 점검 및 교육
- 전 직원은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 추진 및 소극행정 혁파
-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자치법규)개선 및 발굴

○ 행정지원과, 기획조정과

- 추진부서별 주요과제 수행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 점검 시 실적 제출

○ 중구시설관리공단

-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2020.1)」에 따른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구축. 끝.